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 고 인 A

검 사 정연우(기소), 김민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명호(국선)

판 결 선 고 2026.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B'를 통해 피해자 C(여, 18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4. 12. 17. 04:00경 경산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게임에 접



속하여 피해자에게 '누나 음모, 누나 안에다 할래, 누나 임신시킨(킬)래, 누나 집에 딜도 있지, 딜도 없으면 내가 딜도가 되줄래, 누나 음모에 코박고 죽을래, 누나 알몸, 누나는 엉덩이 커요?, 누나 긴밤에 얼마야, 누나 몸팔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4. 12. 25. 16:3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후 피임약을 먹으라고 씨발년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감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20931호, 2025. 4. 22.)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24. 10. 22.) 제2조,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



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및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23.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3.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박경모 _____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범행일시	내용
1	2024. 12. 25. 16:39	사후피임약 먹으라고 씨발년아
2	2024. 12. 25. 18:31	"E 전대통령 사후피임약 먹으라고 씨발년아"라는 문구가 기재된 사진
3	2024. 12. 25. 18:32	"E 전대통령 사후피임약 먹으라고 씨발년아"라는 문구가 기재된 사진
4	2025. 01. 02. 09:17	"섹스머신"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캐릭터 사진
5	2025. 01. 13.경	성기가 발기된 개 사진
6	2025. 01. 13.경	성기가 발기된 성기 캐릭터 사진
7	2025. 03. 16.경부터 2025. 03. 21.경 사이	"딜도 없으면 내가 딜도가 되줄래"